

APEC Professional Engineer 技術士의 域內 相互認定에 대한 動向

On the Mutual Recognition of APEC Professional Engineer



* 許 填

1. 머 리 말
2. 技術士의 相互認定의 動向
3. 한국의 對應方案
4. 맷 는 말

1. 머 리 말

요즈음 Globalization이란 말이 자주 들리는 시대가 되었다. 局地的인 분쟁으로 세계 여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도 있지만 Globalization의 말은 獨立된 나라의 존재를 전제로 한 뜻이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다 큰 뜻을 가지는 것이다.

1948년 창립한 國際機關인 關稅貿易一般協定(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은 物資의 國境線을 너머서 이동하는 貿易을 容易하게 하며 世界經濟의 발전을 期하는 關稅를 중심으로 하는 貿易障礙를 제거하는 것이 主目的이었다.

* APEC Professional Engineer 韓國審查登錄委員會
副委員長, 우리 학회 회장

GATT를 발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1995년 설립된 世界貿易機關(WTO; World Trade Organization)는 GATT와 비교하면 세 가지 항목이 다른점이 있다.

첫째, GATT에서는 물질의 국경선을 넘는 이동에 局限한데 비하여 사람이 제공하는 Service의 무역에 關한 一般協定(GATS ;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의 국제적 규율을 만든 것이다.

둘째, GATT는 국제적 Rule이 충분하게 적용되지 못했던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도 국제적 규율을 적용하게끔 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WTO 협정에 違背 되었을 때 提訴하게 되며 紛爭處理 Panel에서 議論하게 되다 Panel 정보의 採擇 對抗處置의 승인은 全加入國이 반대하지 않는 한 부결되지 못한다. 卽, Negative Consensus 방식에 따라 승인되는 것이다. 이민과 未熟練勞動者들의 국경선을 넘는 이동은 제한되어 있지만 사람이 제공하는 고도의 Service의 자동화는 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外交通商部가 WTO/GATS의 問題를 全般하고 있다. GATS는 모든 Service 分野를 대상으로 規制의 투명성과 점진적 자유화를 規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資格要件, 資格審查에 對한 手續, Service 貿易에 대해서 불필요한 장해가 되지 않는 필요한 규율을 작성한다는 규정을 하고 있으며 WTO에 필요한 勸告를 할 수 있는 作業部도 설치하고 있다.

GATS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직업은 기술사(Professional Engineer)를 비롯하여 辯護士, 公認會計士, 醫師, 建築士등 특정한 직업에 종사할 때 면허를 필요로 하는 여러 分野의 職種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기술사의 상호인정은 기술사 單獨의 問題가 아니라 WTO/GATS의 움직임의 일부로서 그간 회원국의 적극적인 협조로서 相好認定發足을 目前에 두고 있다.

2. 기술사의 상호승인 동향.

1) WTO/GATS와 地域間 2국 협정

WTO/GATS으로서는 ① 직업인으로서 제 공되는 Service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公正, 客觀性, 透明性에 따라 職業人에게 免許賦與하는 것을 要하고 있다.

② 各國이 職業人的 免許를 賦與하는 要件은 國제적인 기준을 인정하지 않고 각국이 면허를 부여하는 組織의 自由裁量에 委任한다.

③ 직업인의 면허를 상호 인정코자 할 때는 免許賦與條件을 반드시 갖출 필요까지는 없지만 상호 인정 協定締結에 前向的으로 처리해야한다.

④ 교육 Curriculum이 상호협정 체결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교육 Curriculum은 당연히 교육자나 면허를 賦與하는 조직에서는 주목할 만한 留意事項이다.

기술사의 상호인정은 원래 WTO/GATS의 일이다. 각국의 기술사의 자격요건이 다르고 상호인정협정을 작성하는데 容易하지 않는 點 등 그 외 公認會計士, 辯護士 및 건축사등 各國 정부에서 볼 때 보다 긴급성을 요하는 분야가 있다는 점은 현재로서 기술사의 상호인정에 대해서는 WTO/GATS 이외의 NGO에서도 활발한 협의를 하고 있으며 APEC HRD에 자문하고 있는 것이다.

2) 北美協定

地域의 협정으로서 현존하는 북미자유협정 NAFTA(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의 일부로서 '95년 5월 체결한 加國, 美國, Mexico 간의 기술사 면허 상호인정 확인서(Mutual Recognition Document and Recommendations to NAFTA Commission)이다.

이것은 1國에서 免許를 받은 기술사의 면허는 協定內 다음 2개국에도 유효하다.

그렇지만 이 협정은 聯邦政府의 協定이다. 기술사 資格試驗의 實施와 면허는 州政府 權限으로 國內 州政府間의 相互認定은 하고 있으나 他國의 州政府 免許는 거의 인정되고 있지 않다. 다만 Mexico 接境을 이루고 있는 Texas 州를 비롯한 몇個州에 不過하다. 다만 상호인정할 수 있는 要件으로서 技術士資格取得後 최소 12년의 Full Time 實務經驗을 要하며 그 中 8年間은 獨립된 실무경력을 말한다. 또한 중요한 것은 NAFTA의 면허를 賦與하는 요건으로 國籍 및 長期駐在要件이 배제되어 있는 점이다.

3) 歐洲의 動向

EURO 統一圈을 創設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옛날부터 싹트기 시작했다. 이제 歐洲共同體 EC(European Commission)을 거쳐 Euro聯合 EU(European Commission)이 創設되어 현재는

共通通貨 Euro 導入에 이르렀다. 歐洲諸國에서는 기술사의 면허는 나라마다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으므로相互認定協定을 체결하는 것은 容易한 일은 아니다. 따라서 상호인정이라기 보다는 통화의 Euro에 대응하는 共通資格을 만드는 것이 容易한 것으로 思慮되어 Euro 工學會聯合 FEANI(European Federation of National Engineering Associations)가 Euro 기술사제도를 만들었다.

1970년 European Register of High Technical Profession을 만들고 이어 1992년 制度改正으로 지금의 Euro 기술사 FEANI (Register of European Engineers) 制度이다. 이 資格을 充足하는 안건으로 ① 18세 연령을 標準終了年限으로 하는 中等教育卒業 ② 그 後 3년간의 FEANI가 인정하는 大學修了 ③ 같은 2년간이 FEANI가 인정하는 대학의 繼續教育의 修了 또는 實務經驗, 혹은 기술훈련의 終了 ④ 다시 2년간 실무경력이다.

FEANI는 Euro 技術士 制度를 만들었으나 EC 加入國에 強制權은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Euro 처럼 제도가 나라마다 큰 차이가 있는 나라에서 FEANI 기술사제도가 타국에서 인정되는 것은 기술사 자격을 충족시키는 最低案件이 Euro 기술사 면허의 자격보다 얕은 나라뿐이다.

따라서 職務에 實際就業은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 Euro 기술사면허의 FEANI 加入權內의 有效性 實態는 이제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의 Chartered Engineer가 신청하면 자동적으로 Euro 기술사의 면허가 나오나 Euro 기술사를 영국의 면허를 賦與하는 英國評議會(The Engineering Council)에서 인정하느냐는 아직 미지수이다.

4) 亞細亞太平洋 地域의 動向

亞細亞 太平洋지역의 기술사 相互認定은 着實하게 推進하게 된 것은 호주와 Newzealand 兩國 및 香港의 热誠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3개국은 모두가 政府가 법률에 기반을 두고 면허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사의 면허는 英國王室로부터 부여된 현장에 기인한 公學會聯合 (Institution of Engineers) 或은 技術士會 (Institution of Engineers)가 부여하는 것이다.

New Zealand는 기술사 호주 및 香港은 Institution of Engineers 이지만 기술사가 主導하여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 지역의 聯合体으로서 東南亞太平洋 工學會聯合 FEISEAP(Federation of Engineering Institutions of Southeast Asia and the Pacific)內의 教育, 訓練委員會, 技術士業務委員會가 APEC Engineer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80년 초부터 가입하고 있으며 상설위원회는 費用問題로 보내지 못하고 위원으로서 현재 부회장을 필자가 맡고 있었다. 호주, Newzealand, 香港의 3개국은 Anglo Saxon 계의 나라로서 美英과 繫密한 관계를 가지고 世界工學會聯合 WFEO(World Federation of Engineering Organization)를 통해서 主導的 역할을 하고 있다.

호주, Newzealand의 2개국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경제의 繫密한 貿易協定(Australia-Newzealand 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Agreement)을 1996년 체결이 협정의 一部에 기술사의 상호인정이 포함되어 있다.

호주공학회연합(Institution of Engineers Aust)은 기술사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기반이 약한 Indonesia, Vietnam 등을 지원한 바 있으며 멀지 않은 시일 내에 APEC Engineer의 2개국 또는 4개국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본다.

이에 香港, Malaysia, Singapore 등이 加勢할 것으로 보인다.

5) Anglo-Saxon 系의 國家들의 動向

기술사의 자격의 標準的案件은 공학부를 마치고 實務經驗을 쌓은 것이다.

Anglo-Saxon 系의 6個國(Island, Aust., Canada, Newzealand, 英·美)등이 1989년 기술사의 상호인정을 위한 제 1 步로서 자격요건의 하나인 工學部卒業資格의 相互認定協定을 체결한 것이다. 加入國의 인정된 공학부의 졸업생을 대등하게 인정한다는 것이 간접적 목적이다. 즉, Washington 협정이다. 여기 참고할 것은 그 나라에서 기술사를 인정하는 工學會聯合(加, 美國을 제외한 4개국)과 기술사 인정을 하는 단체가 인정하는 대학의 공학부를 평가하는 평가단체(加, 美國)이다. 그후 남아프리카, 香港 등이 추가되어 8개국 협정이 되었다.

Washington 協定加入이 8개국이 기술사의 상호인정을 목적으로 1996년 3월 香港에서 모였다. 이 모임에는 FEANI가招待되었으며 기술사 상호인정을 歐洲諸國으로 넓히자는 것이다. 香港에서의 議論된 結果 ① 學部卒業時의 學業의 동등성을 논의하는 것은 기술사의 상호인정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이 못된다.

② 기술사의 기량이 동등한 것이 중요하다. 이 상 두 가지 점에서는 다같이 동의했다.

Washington 협정을 해결해 놓고 “學部卒業時의 학업동등성을 의논하는 것은 기술사의 상호인정에 대해서 건설적인貢獻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Anglo Saxon 系 나라의 교육시스템과 다른 교육시스템을 採用하고 있는 歐洲人陣들의 나라들과의 相互認定을 맷고자 하는 의도가 存在하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술사의 상호인정은 기술사의 기량의 等價性의 評價가 正當하다고 하지만 等價性의 客觀的評價는 困難함으로 現在로서는 여러 나라의 기술사제도를 존중한 다음 기술사면허를 취득후 어느 정도의 경험을 가진 기술사를 상호인정의 대

상으로 하자는 건설적이고 실현성이 있는 提言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사를 Full Professional Level의 技術士라고 호칭하며 평가할 수 있는 개념이다. 이것은 미국에서도 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상호인정 System의 早期確立을 위해서 1997년 San Diego에서 8개국 대표들이 다시 만났다.

기술사의 표준적 자격요건으로서 ① Washington 協定이 생각하는 인정된 교육 또는 동등의 질이 보증된 교육을 받을 것 ② 實務訓練을 쌓을 것 ③ 적절한 연대에 適切期間의 만족할 만한 실무경험을 쌓을 것 이상 세 가지 요건이 기본이 된다는 것에 동의했다.

교육에 대한 요건은 香港의 동등한 내용보다는 약간 後退했지만 상호인정의 困難視 되는 점을 피하기 위해서 상호인정의 대상이 되는 기술자의 기준을 높이는 것이 좋다는 견해에 따라 Full Professional Level을 NAFTA의 상호인정과 같은 실무경험으로 대치하자는 것이 提案되고 있다.

言語의 문제에 있어서는 受入國의 通常業務에 대한 技術文書를 이해하고 그 외 일상업무를 해낼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실무에 종사하는 나라의 기술기준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필요성도 상호인정의 요건의 하나가 될 것이다.

아직 구체적 대응안은 제안된 바 없다. 다른 한편으로 獨立해서 Consultant 업무에 종사하는者와 기업 내에서 職務에 종사하는 기술사 그리고 合併企業에서 일하고 있는 기술사간에는 언어의 要求 및 基準의 理解度에 대해서 必要性은 크게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지적된다.

공학교육 수준의 동등성과 기술사의 상호인정과는 별개문제라고 강조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로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논할 만한

Theme이다.

6) APEC Engineer Project의 동향

濠洲 공학회연합은 영국계의 나라들 뿐아니라 아세아의 여러 나라로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은 법률에 따라 면허를 주는 나라로서 아세아 태평양연합만이 檢討한 상호인정협정 체결은 困難時 되는 것으로 判斷 호주정부와 일체가 되어 정부간 협의로서 이 문제를 검토하게 된 것이다.

이 지역의 정부간 협의의 장으로서는 濠洲聯合, 北美自由貿易協定에 對應 經濟 Group으로서 Malaysia의 Mahatil 수상이 제창한 亞細亞經濟 회의가 실현되지 못해 미국과 加國을 포함한 亞細亞太平洋經濟 協力會議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이 검토키로 하고 APEC의 人材養成開發部會 HRD(Human Resources Development)에서 호주정부의 財援으로 호주공학회 연합이 주도가 되어 기술사 상호인정의 작업이 진행하게 된 것이다.

1996년 5월 Sydney에서 APEC HRD의 제1회 運營委員會를 1997년 3월 Bali 섬에서 제 1회 作業委員會를 1997년 6월 Melbourne에서 제2회 운영위원회, 작업위원회의 合同合議가 개최되었다. 그후 1997년 8월 Manila에서 Work Shop을 연 다음 11월에는 제3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연말에 최종보고서를 작성 APEC 加入國에 송부하게 된 것이다. APEC의 HRD의 작업이 마무리되어 가입국이 동의하면 기술사의 상호인정에 동의한 나라끼리 실시하게되는 것이다.

제 1회 作業委員會에서 기술사의 상호인정에 關해서 ① 기술사는 學部卒業수준으로 타인의 監督밑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허락되는 사람 (Graduate Professional Engineer or Equivalent) ② 최소한의 감독밑에서 충분한 책임을 가지고 작업을 한 경험을 가진 기술사(Experienced

Professional Engineer) ③ 상당한 경험을 축적하고 고도의 기술적, 혹은 직무의 Management 책임을 가진 기술사(Executive Professional Engineer or Equivalent)등 3가지 分類이다. ②의 경험을 가진 기술사의 수준은 명확한 기술은 없지만 ①의 수준에서 4년 정도의 실무경험을 가지고 독립해서 기술사업을 할 수 있는 30세 정도의 기술사를 뜻하는 것이다.

學部卒業水準은 나라의 제도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데 反하여 경험을 쌓은 기술사는 學部水準卒業後의 職業인으로서의 훈련 및 경험을 평가할 수 있으므로 기술사의 기술수준을 어느 정도의 발전에서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함으로 상호인정이 대상으로서 이 경험을 쌓은 기술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되어있다. 제1회 作業委員會에서 상호인정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사의 수준은 Washington 협정에 加入國이 San Diego 會所에서 제안하고 있다. 學部卒業수준으로부터 최저 12년간의 Full Times 실무경험을 쌓은 기술사 수준에 비하면 많이 떨어져있다. 그 외 學部卒業준의 기술사에 대해서는 교육이 질과 자격에 대해서는 투명성 있는 保證이 필요하고 있다. 제1회 作業委員會에서는 受人國이 언어의 문제 및 기술사수준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된 바 없으나 8月의 Manila 회의에서 의논시, 출발점인 안건에는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Washington 협정 가입국의 San Diego 회합에서의 제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 들어 있다. Melbourne의 運營委員會에서는 경험을 쌓은 기술사의 상호인정된 기술사를 APEC Engineer로 칭하고 있는 이는 Euro Engineer(유로 기술사)에 대응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1980년 발표된 東南亞太平洋工學會聯合 FEISEAP은 會期 2년마다 가입국을 巡迴하면

서 총회를 개최하고 各分科委員會는 年2회정도로 열리게된다.

이 기구는 NGO로서 각국대표가 기술사(Professional Engineer)로 되어 있음으로 주된議論은 技術士業務委員會(Professional Practice Committee)와 工學教育 및 訓練委員會(Engineering Education and Training Committee)가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한국대표가 참가하게 된 것은 1994년 제3회總會 때이다. 당시 가입단체로는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名儀로 되어 있어 당시 이사인 필자가 처음 선을 보게된 것이다.

국내사정으로는 元來 政府補助金이 없어 科技總自體에서도 自費로 가는것도 잘된 것으로 생각할 때이다. 그러나 막상 회의에 나가서 여러 대표들을 만나 보니 아세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가는 富者나라에서 왔다고 부러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反共最前線에서 고생이 많다고 慰安도 해주며 그렇게 친절히 해주는데 정말 잘 왔다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하니 호주대표가 기술사의相互認定件에 대한 草案을 가져와서 各國대표들의 실정을 듣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은 것이다.

1986년에 이르자 제 4회 總會를 한국에서 誘致했다. 당시 昌原에 있는 학국중공업(주)(대표 성낙정)이 科技總副會長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준비위원장 성낙정, 부회장인 필자가 3박 4일간의 회의를 돈한푼 들이지 않고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어 名實共허 그들이 밀하는 부자나라의 名譽를 갖추게 되어 一生一代의 큰 기쁨을 안게 되었다. 그후 1980년 後半期까지는 매년 참가했으나 90년대 들어 한국기술사회 부회장직을 겸하게 되다보니 바쁜 일정에 科技總일에 대해서는 자연히 등한히 하게 되어 1996년에 이르자 비로서 FEISEAP 회의가 우리나라로서는 너무 소홀히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선 科技

總名儀로 되어 있는 FEISEAP 正會員權을 한국 기술사회로 변경하고 이에 正式認可를 받기 위해 1996년 4월 북경에서 개최되는 제 9회 FEISEAP 總會에 참석하여 명의변경 건에 대한 동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그간 APEC Engineer件 議論이 계속으로 우리나라와는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으로 총회 분과 위원회 할 것 없이 성실히 참가함으로서 1998년 3월 제10회 총회에서 필자가 부회장으로 피선되어 오는 2000년 제11회 총회에서 회장으로 被選되면 우리 나라의 總會誘致가 8년만에 다시 열리게 되는 샘이 된다.

FEISEAP가 NGO인데 반하여 1996년 5월 Sydney에서 APEC HRD(Human Resources Development)가 Go로서 제1차 운영위원회를 嘴矢로 APEC Engineer Project를 년 2회 이상 회합을 거듭하며 技術相互認定案이 만들어져 이를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1999년 6월까지 Sydney에 각 가입국은 APEC Engineer 심사등록위원회(Monitoring Committee)案을 提出도록 되어있다.

FEISEAP 회의와는 APEC Engineer Project에 관한 한 APEC HRD에서도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勞動部, 教育部에다 한국대표를 派遣도록 勸諭한 바, 피일 차일 미루다가 1998년 11월 처음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한국대표를 보낸 바 있다.

APEC Engineer 심사등록 위원회는 기술사의 상호인정에 관한 사항이니 일본, 호주등과 같이 우리 기술사회가 代行하도록 건의했으나 노동부의 입김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맡기로 하여 현재 작업중이다. 1998년 12월 교육부 주최로 노동부과학기술부, 기술사회, 엔지니어링 진흥협회, 토목협회등 官民合同合議를 필자가 主導 끝에 합의하기를 APEC 심사등록 위원회는 기술사회 내에 설치하는 것이 安當하다고 만장일치로

決議까지 誘導했으나 科技部의 無關心으로 노동부가 맡게 된 것이다.

3. 한국의 대응방안

(1) APEC 지역에서의 상호인정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

技術士의 相互認定協定의 締結에 있어서 한국으로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를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 1) 利點, 不利益한 점을 비교한 다음 가능한 한 이점이 많은 협정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 2) 협정은 技術士에 국한된 單獨問題가 아니라 WTO/GATS의 일부로서 반드시 협정 체결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져야한다.
- 3) FEANI, NAFTA 협정의 존재를 인정하고 세계적인 협정에 들어가기 前 우리의 유리한 APEC 지역부터 협정을 채결해야 한다. 우선 한국과 타국간의 2국간 협정부터 締結한다.
- 4) 협정의 체결에 앞서 중요한 것은 인정조건의 하나인 공학교육의 品質保證, 인정하는 技術士의 기술수준, 언어 및 技術規律의 이해도에 대한 要求水準등이다.

기술사의 상호인정에 대해서 그간 우리 나라는 회의참가를 계울리 하였으나 이제부터라도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 1) 한국 기술사제도의 운용도 일본, 미국, 호주등 선진국에 맞추어 보완해야 할 것이다.
- 2) 國內의 의견을 통일하여 한국에 합리적인 案을 가져야 한다.
- 3) 隣接 여러 나라와 의견을 교환
- 4) 今後 各種 國際的 會合에 發言力を 강화하기 위해서 몇 사람을 선정하여 가능한 동일인에 계속 참가할 수 있도록 전문화해야 한다.

(2) 相互認定 協定체결의 利點과 不利益 상호인정시 이점으로 생각되는 것은

- 1) 한국의 기술사가 해외활동에 용이하다.
- 2) 외국의 優秀한 기술도입이 가능하다.
- 3) 기술, 또는 技術資料의 선택과 확대를 가져온다.
- 4) 한국의 기술사, Consultant 업계의 선의의 경쟁을 가져온다. 반대로 불리한점으로는 한국이 컨설턴트 시장이 줄어들 수 있다. 物資의 무역에서는 개발국이 장벽을 설치코자 하는데 반하여 기술사는 선진국이 장벽을 높일 것으로 생각된다.

APEC HRD에서 제안하는 技術士 水準은 개발국에는 많은 기술사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선진국 기술사에 비하여 紿與水準이 비교적 낮은 관계로 선진국은 상호인정으로 Consultants 業界에 다소의 피해가 우려될 것이다.

(3) 今後 우리의 갈 길과 상호인정에 대한 認識

상호 인정문제에 대해서 會議에 참가하는 것은 빠져서는 안된다. 이때 우리의 주장할 안건은 可及的 他代表들과 孤立된 주장이 된다면 의미가 없다. 경우에 따라서 타국의 주장들이 通過하여 밀려날 수 도 있다.

언어에 대해서는 영어의 Anglo-saxon系의 國家, 多樣한 歐洲 여러 나라에 비하면 漢字나라, 중국, 일본, 한국으로 분류된다. 우리 主張을貫徹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 중국과 손잡고 협동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FEISEAP 會合에는 참가하고 있으나 WFEO 또는 APEC Engineer Project 회합에는 참가가 별로 없었던 관계로 늦은 감은 있으나 隣接國家들과 먼저 손잡고 기술사의 상호인정 협정에 적극성을 기함은 물론 WTO/GATS의 분쟁처리의 課題도 슬기롭게 對應하는 것도 중요하다.

(4) 工學教育의 품질보증제도

Anglo-saxon系의 나라에서는 Washington 협정에 인정했는 학부교육의 상호인정의 전제로서 學部教育의 제3자 평가를 중요시하고 있으나 APEC Engineer에서는 학부교육의 수준 자체는 그리 중요치 않은 방향으로 검토됨으로 학부교육의 제3자 평가는 당분간 염려할 필요는 없게 되었다.

이는 議論시 한국 교육제도가 일본과 동일함으로 多數의 會員國家등이 동조했기 때문에 제3자 평가는 免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앞으로 NAFTA, Euro Engineer와의 상호인정때는 문제가 될 것으로豫想된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우리 나라 교육수준이 일본 다음으로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學部教育을 透明化하고 外部로부터 교육상황을 비추어 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이다.

(5) 상호인정하는 기술사의 기술수준

호주의 주장하는 “經驗을 쌓은 기술사의 수준”은 국경을 넘어 직무를 시행하는 기술사의 수준으로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실무경력 4년 정도의 실무경험 밖에 없는 기술사라면 상호인정이 발효되며 해외에서 일하게되면 먼저 개발국에서 급증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기술사는 단순 노동자에 가까우므로 국경을 넘어서까지 일하는 가치가 있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 더욱이 선진공업국의 기술면에서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예컨대 어느 정도 국가에서 기술사가 부족하며 수준 낮은 기술사를 받아들이는 문제는 WTO/GATS 문제라기 보다 그 나라의 특유한 경우로서 어디 까지나 쌍방간의 협정 해결로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APEC 加入 國全體가 인정하는 상호인정의 기술

사의 수준이라면 Washington 협정 加入國이 San Diago에서 합의한 정도의 수준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도 APEC 加入國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支持를 받을까 염려되는 바이다.

(6) 수입국의 언어와 技術規律에 대한 要求

동남아와 같은 多言語 지역에서의 언어요구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표 1> EurIng 국가별 취득자 수 (1996년 1월)

국가명	EurIng취득자 수(명)
오스트리아	51
벨기에	201
키프로스	2
체코	n/a
덴마크	201
오스트리아	n/a
핀란드	507
프랑스	2040
독일	1837
그리스	128
헝가리	320
아이슬란드	10
이탈랜드	744
이탈리아	n/a
룩셈부르크	9
몰타	38
네델란드	383
노르웨이	140
폴란드	48
포르투갈	1
루마니아	n/a
슬로바키아	n/a
슬로베니아	n/a
스페인	1236
스웨덴	237
스위스	240
영국	11546
27개국	19919

자료 : Alan Burden('98) JSCE Vol. 83. 34쪽

기술논문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란 대단한 것이다.

태국어, Indonesia 語, Vietnam 語, Myanma 語, 中國語 등을 이해하는 우리 나라 기술사가 몇 명이나 될까. 따라서 技術士會에서 世界의 공통어인 영어로 소통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술규율에 있어서는 이론과 경험이 공통적으로 되어 있어서 優秀한 기술사라면 규율자체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은 몰라도 설명을 들으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技術規律의 이해에 대한 요구는 없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7) 韓國技術士制度 運營의 整合化

기술사의 수준, 기술사 자격을 얻기 위한 요건은 나라마다 큰 차이는 있으나 우리의 제도를 국제화에 맞게 정합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술사는 「원칙적으로 고등교육을 마치고 공학적 判斷을 隨伴하는 책임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자」로 정의되어 있다. 기술사제도 운영에 있어서 미국은 技術士補(Engineering in Training) 즉 기초시험을 필수적으로 치른 후 기술사 밑에서 만 4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쌓은 후 기술사 본시험을 합격함으로써 기술사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기술사의 상호인정을 목전에 두고 서구 선진국에 비하여 한국의 기술사 수가

적은 것을 상당히 불리한 점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기술사 자격시험 합격률이 미국은 약 40%, 영국은 약 50%에 이르는 반면, 한국은 약 12%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한국 기술사 시험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탈락자 중에는 미국이나 영국의 기술사에 비해 손색이 없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시험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탈락자를 양상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기술사의 국제통용을 앞두고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한편 우리나라 기술사 합격률은 일본 15%에 비해 낮은 약 12%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일본의 경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시험을 쉽게 하여 기술사의 질을 떨어뜨리면서까지 기술사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기술사 자격 소지자에 대해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행 우리나라 기술사 제도와 연관하여 개선할 사항으로 첫째, 시험수준의 향상 둘째, 점검방법의 개선을 지적하였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기술사의 수준을 고려할 때 그 수준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기술사의 질적 하락을 야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문제는 기술사의 국제적 상호인정을 앞두고 이미 제시된 APEC Engineer의 자격요건을 혼동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나라 기술사 자격시험의 개선을 시도하여야 한다는

<표 2> 국가별 기술사 자격취득자 수 비교

'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대만	태국
유자격자수(천명)	15.2	35.6	641.0	296.0	120.0	3.2	3.5	20.0
인구(천명)	44,606	125,510	263,810	58,330	58,110	2,890	21,500	60,270
유자격자의 비율(인구 천명당 사람수)	0.34	0.28	2.4	5.1	2.1	1.1	0.16	0.33

자료 : 石井弓夫(1998). JSCE. Vol. 83. 31쪽

것이다.

이때 미국의 기술사 제도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면(기술사 자격소지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우리 나라 기술사 자격제도 개선 시, 미국의 제도를 참고하여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6.4%로 가장 높았음), 현재의 기술사 능력 보다 한 단계 상위의 능력을 인정하는 자격을 병존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4. 맷 는 말

WTO/GATS/HRD 중에서 기술사의 상호인정 움직임은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기술한 북미 및 歐洲地域 貿易圈 협정이 存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 나라는 일차적으로 APEC Engineer 상호인정을 채결하는 것이 장차 세계적인 협정의 과정으로서 필요한 선택으로 확신하는 바이다.

亞細亞 지역은 北으로부터 南에 이르는 美大陸 또는 歐洲地域과는 여러 가지 조건이 크게 차이가 있음으로 亞細亞諸國은 보다더 효과적인 相互協定 締結로 WTO/ GATS의 협정에 충실하여 NAFTA FEANI로 이어지는 제3의 Group로서의 가능성 있는 APEC에 노력하는 길이 가장 賢明한 것으로 사료된다.

아세아 태평양지역에서는 호주가 현재까지는 주도적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Anglo saxon 系로서 英語國을 감안할 때 경제 기술국으로서 우리나라도 일본과 손잡고 非英語國을 끌어들여 主導國 역할을 한다면 상호인정의 문제부터 우리에게 보다 더 유리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APEC 지역에서의 협정이 끝나면 이어서 세계적인 협정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科學技術 立國을 標榜하는 우리 나라가 ISO 9000작성에

우리 나라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듣고 있다.

우리 나라 FEISEAP을 일찍부터 참가하고 있으나 WFEO 및 APEC Engineer Project 등에는 참가여부를 비롯해서 참가했더라도 필요한 발언도 하지 못하는 등 소홀히 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參加費도 대부분 參加者 자비로 충당되고 있는 것은 다시 한번 再考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금후 각종 국제적 회합에는 국익을 위주로 먼저 몇 개를 선정하고 다음은 발언력이 강하고 國際情報에 밝은 인재를 선정한 다음 가능한 동일인을 계속적으로 派遣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되는 바이다.